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21 선고 2023가단13149 판결 [연대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2.

판 결 선 고 2024. 5. 21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6. 2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, C이 1991. 10. 22.경 차용인인 소외 D와 연대보증인인 피고(D의 동생)에게 40,000,000원을 이자 월 3%, 변제기 1992. 1. 22.까지로 하여 대여하였고,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D는 위 채무금의 변제약속을 지키기 위한 담보로 수취인 C 액면 금 60,000,000원, 지불기일 공란 발행일 1991. 10. 22.로 되어 있는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기도 하였는데, 원고가 2012. 2. 15.경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및 이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므로,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2. 판단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권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,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92. 1. 22.부터 10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, 기록에 따르면 위 백지약속어음 역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(기록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면서 청구원인만 일부 달리하여 피고와 상대로 여러 차례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).

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

판사 안홍준